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2021. 11. 23. (화) 14:00~16:30  
LW컨벤션 크리스탈홀

주최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차 Contents

개 요 / 1

경과보고 / 3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발표 1 / 15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향후 과제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2 / 35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부 록 / 6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토 론

좌장 박상헌 한라대학교 교수

토론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홍경진 농민신문 차장

홍성열 충청북도 증평군수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 [개요]

- **추진목적**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을 위해, 관련 해외사례 공유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장 마련 등 성공적 제도 도입방안 논의
- **주요내용** : 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②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의미 및 향후 과제  
                   ③ 일본사례(고향납세제) 소개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 등
- **일시** : 2021. 11. 23.(화) 14:00~16:30
- **장소** : LW컨벤션 크리스탈홀(서울 중구)
- **주최**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4:00 ~ 14:20 (20분)	개 회 사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축 사	한병도 국회의원
	환 영 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14:20 ~ 15:10 (50분)	경과보고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발 표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향후 과제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발 표 2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 정착 방향 모색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15:10 ~ 16:10 (60분)	좌 장	박상현 한라대학교 교수
	토 론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홍경진 농민신문 차장
		홍성열 충청북도 증평군수
16:10 ~ 16:30 (20분)	질의·응답 및 폐회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경과보고]

---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이 형 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2021. 11. 23. 고향사랑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내 고향 살리는

#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CONTENTS

- I 도입 배경
- II 추진 경과
- III 주요 내용
- IV 기대 효과
- V 향후 계획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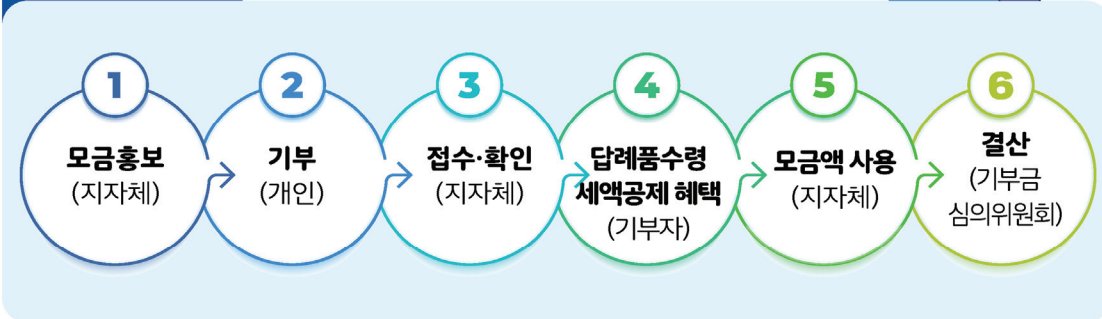
## I 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 기부제란?

-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운영 체계



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 도입배경

### ▶ 지역 인구감소(2000년 ~ 2020년 간)



- 전국 시군구의 66%(151개) 인구감소

###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 ▶ 지역경제 격차 심화



※ 출처 : 통계청

4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 도입배경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2020년 재정자립도(%)

지역	2020년 재정자립도(%)
전국	45.2
서울	76.1
인천	54
경기	58.6
강원	25.8
전북	24.9
전남	23.3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악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5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 추진경과 - 제도도입

법안 최초 발의  
2009년

국정과제 채택  
2017년

법 제정  
2021년 10월

2016년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2020년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행안위 통과

6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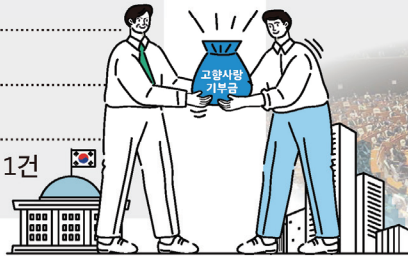
## II 추진경과 - 법안발의 및 제정

### 20대 국회 총 14건 법안발의

- 법률 제정안 4건
- 기부금품법 개정안 5건
- 소득세법 개정안 2건
- 지방세법 개정안 2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 21대 국회 총 6건 법안발의

- 법률 제정안 5건
- 기부금품법 개정안 1건



### 21대 국회 법안 심의 과정



7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기부주체·한도액

### 기부자 · 기부처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의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기부



### 기부금액

- **기부액 한도**  
연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합산



8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기부자(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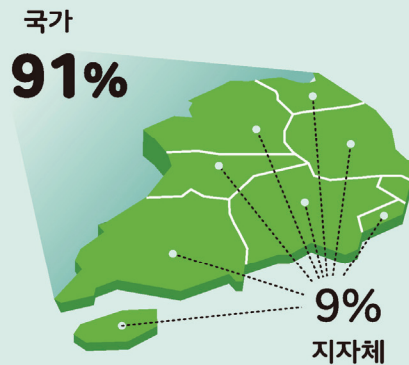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예정)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 초과 ~	16.5 %



#### 세액 분담 비율

- 국가 91%, 지자체(주소지) 9%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답례품·사업시행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을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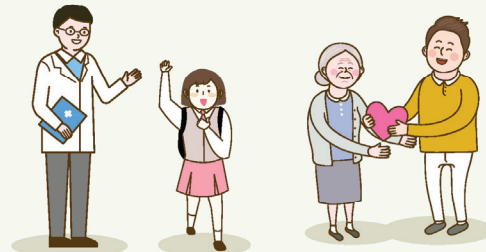
-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조례로 정함)

※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주민 복리 증진 사업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모금 홍보·처벌

#### 기부금 모금·홍보

- 광고·정보통신 매체 활용(개별모금활동 불가)

#### 모금방법 위반

- 호별 방문, 개별 통화·서신송부, 동창회·향우회, 개인 SNS 등

#### 규정 위반시 처벌

**개 인**

- 누구든지 타인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시
-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모금 강요 또는 타인에게 모금 권유·독려 시
- 모금방법을 위반하여 기부금 모금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

- 법을 위반한 자치단체는 기부금 접수 제한
- 위반사실 공표, 다음 회계년도 1년 이내 기부금 모금 제한

11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III 주요 내용 - 심의·감독

#### 고향사랑 기부금 심의위원회(예시)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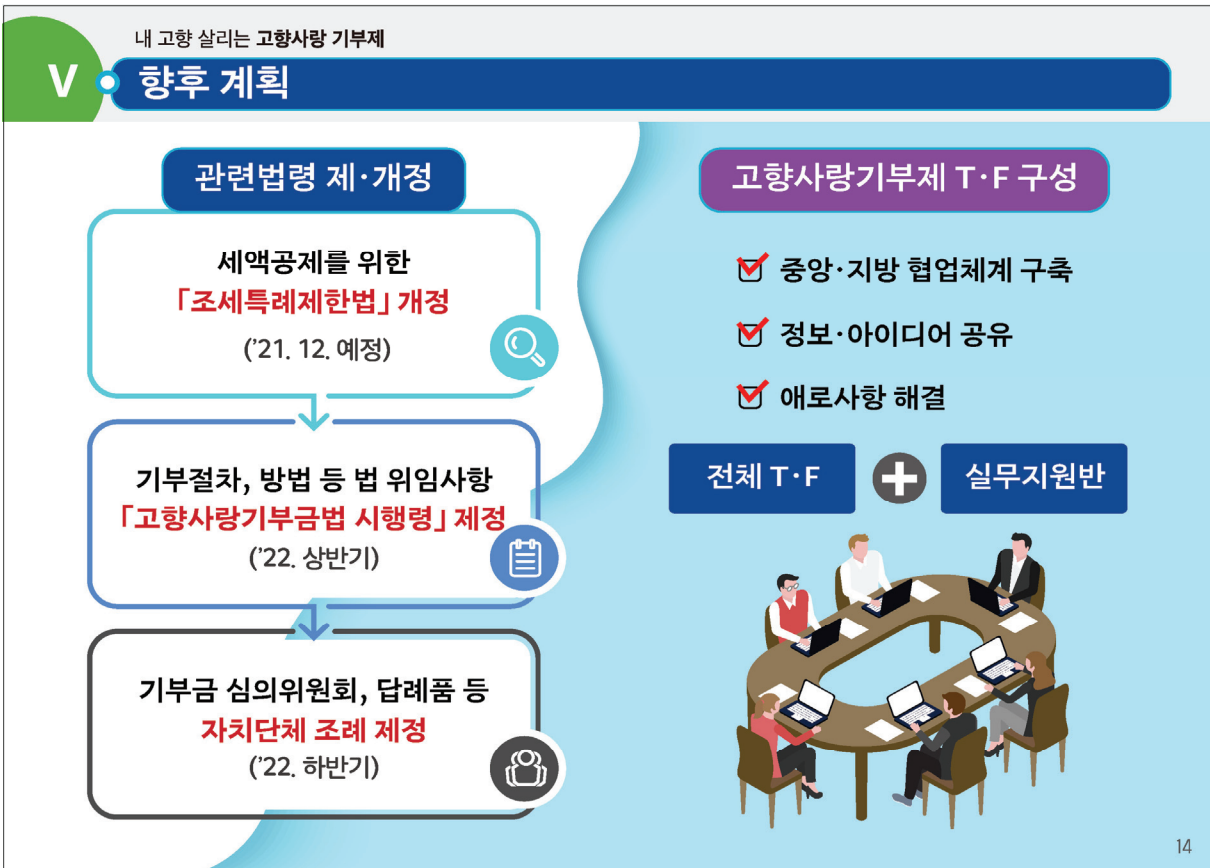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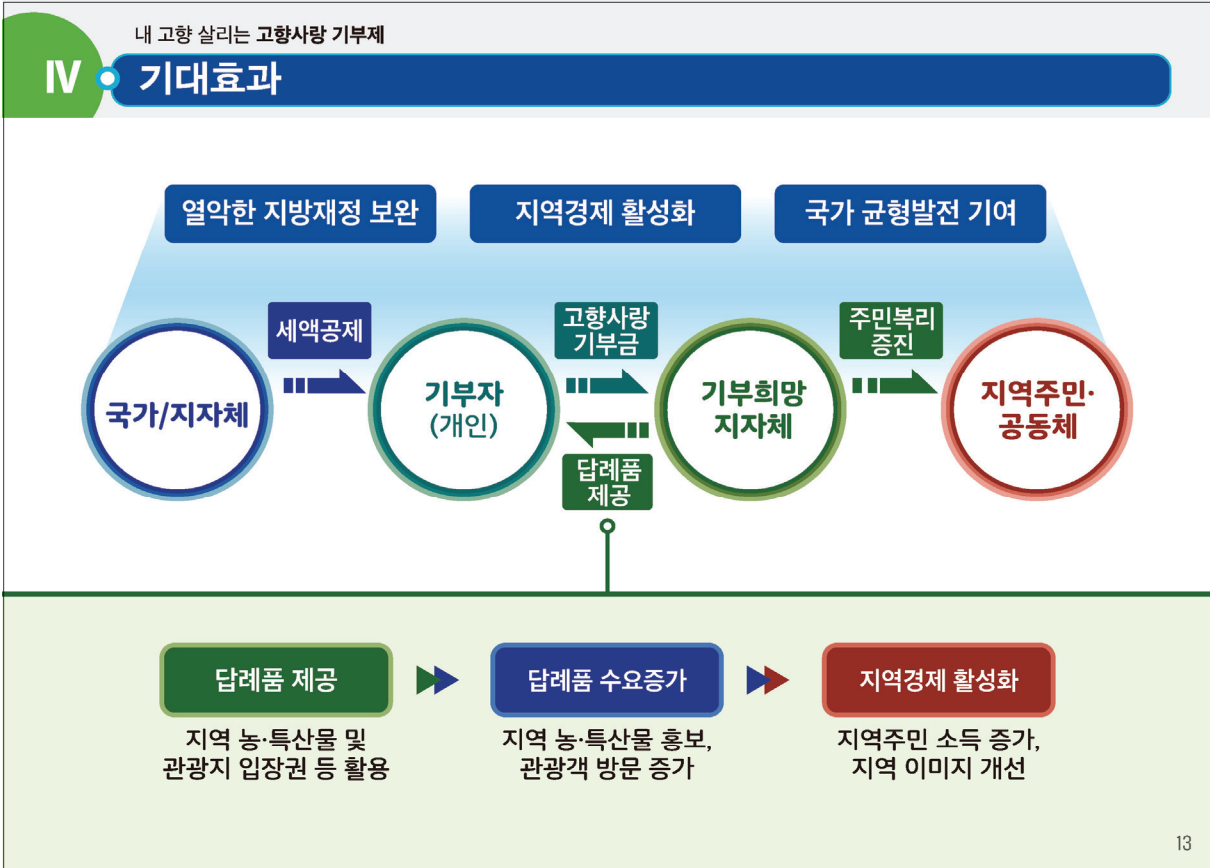
구성(안)	기능(안)
자치단체 의회 민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접수에 관한 사항</li> <li>•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li> <li>•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li> <li>• 답례품 품목 선정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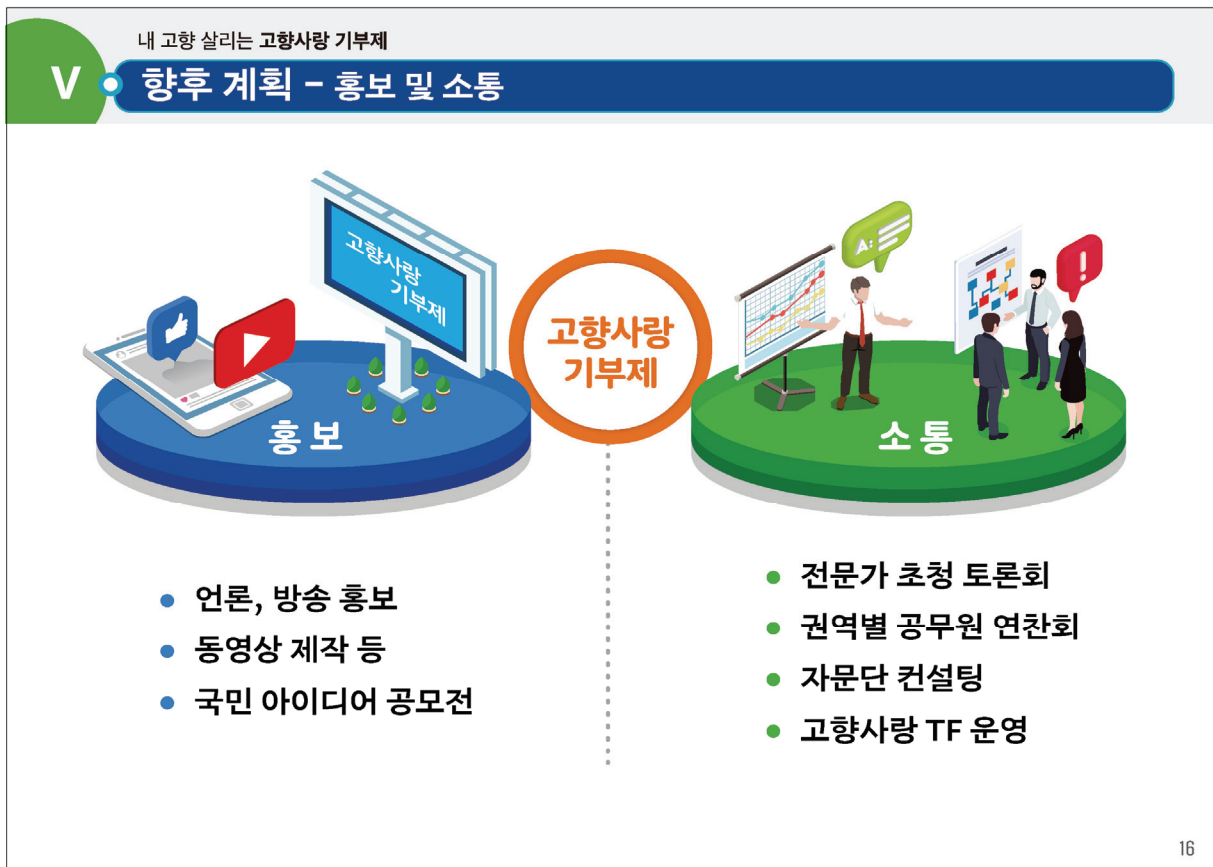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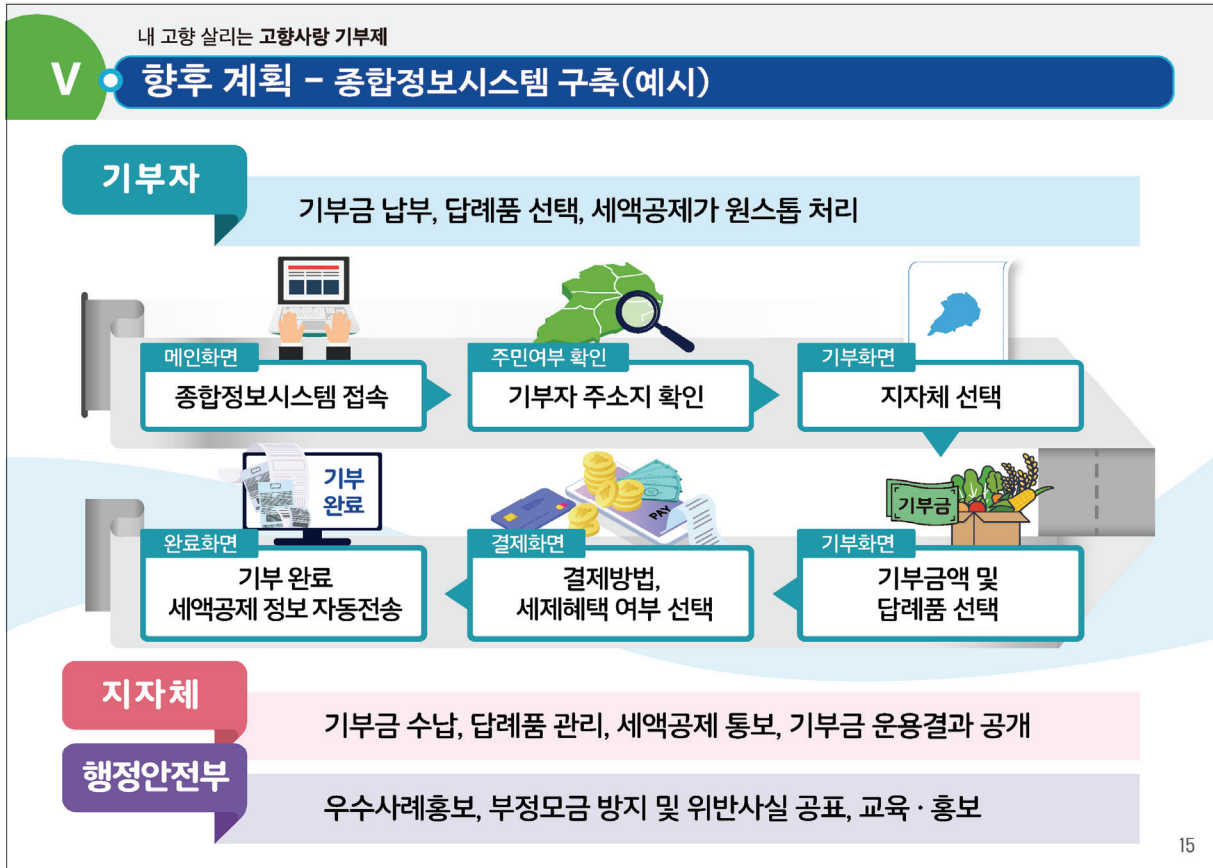
#### 의회 심의

- 01 계획서·결산서 제출
- 02 의회 심의(매년)

모금부터 사용까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12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발표 1]

---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향후 과제

---

염 명 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고향사랑기부제 민·관합동 토론회 발표자료]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미와 향후 과제

2021. 11. 23

발표자 : 엄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1 -

## [목차]

- I.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란?
- II.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
- III.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
- IV.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추진 경과
- V. 고향세제도의 한·일 비교
- VI.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 2 -

## I.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란?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9. 28)
- ☞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통칭 : **고향세**)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14년만의 결실 ⇒ **법제화** (2021. 10. 19) [법률 제18489호]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하면 ⇒ [기부금에 대해서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세제혜택**(세액공제) +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특징 : **지방재정 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 지방문제(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국가(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를 중앙정부의 **하향식** 결정·지원에만 맡기지 않고 ⇒ 개인(타 지역 주민)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 : 발상의 전환 ⇒ [공공(지방재정조정제도) + **민간(기부)**] **공동**으로 추진 : (중앙) **top-down** + (지방) **bottom-up** 방식 결합
- ☞ **지자체 역할 강조** : 민간기부 유도 위한 창의력 및 경영마인드, 마케팅 역량 필요!!

- 3 -

- **고향세 원조 : 일본 「고향(후루사토ふるさと)납세제도」**
- △ 개념 탄생 : 2006년 3월 「일본경제신문」이 **「고향세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기사화
- △ 공론화 : 2006년 10월 일본 니시카와 카즈미(西川一誠) 후쿠이(福井)현 지사가 **「고향기부금에 대한 공제」** 언급 ⇒ 고향세제도가 정치적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
- △ 정치 이슈화 : 2007년 6월에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부가 참의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논란에 불을 지핀
- △ 학문적 연구 시작 : 2007년 10월에 발간된 『고향납세연구회보고서(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2007)
- △ 제도 도입 : 2008년 4월 30일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호) 공포 ⇒ 종전의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공제(제37조의 2)'를 추가하여 **개인주민세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도입 : 이름은 **세금**이지만 성격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 ⇒ 고향납세에 대한 실제 소득공제 시행 : 2009년부터 시작
- △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 : 홋카이도(北海道)

- 4 -

## II.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

■ 고향사랑기부제 : 긍정적(장점) & 부정적(단점) 개념이 혼합된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적 측면** (장점)

- 1) **국민정서 함양과 포용적 성장** 유도 : '고향 및 농어촌의 중요성' 인식 / 애향심 및 농어촌 후원 의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 도왔던 전통 미덕) 고취
- 2) **조세 패러다임의 혁신 (선택납세제)** : 납세자(기부자)에게 납세선택권(납세금액, 납세지 결정권) 부여
- 3) **지방재정 당면 문제 해결** : 지방세수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축소,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지역)균형발전 도모 + [고용 증대, 인구고령화 해소, 지방소멸 억제]
- 4) **'지방자치 시대'의 특성 강화** : 기부자와 지자체 간 직접적 연결고리 형성 - 기부자의 의사 적극 존중 및 지속적 동기부여, 지방행정에 대한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의식 제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 /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 5 -

'지방경영시대' 특성 구현 / 고향 및 농어촌을 매개로 한 지자체 간 인적교류 활성화 기여 /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역정보 제공

- 5)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 제공 시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고용 증대, 귀촌현상 촉진, 지방소멸 억제 ⇒ 선순환 (순기능적 역할)

▲ 고향사랑기부제의 **부정적 측면** (단점)

- 1) **지방자치 원칙** 등 위배 :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거주 지자체가 세액공제 (지방세의 일부를 타 지자체로 이전) ⇒ 지방자치 원칙, 조세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위배 / 기부금의 용처를 명시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외지인에 의해 제약받음
- 2) **정책목적달성 가능성 불투명** :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존 ⇒ 따라서 반드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예 : 재정 취약 지자체로 더 많은 기부금이 유입될 것)는 보장 불투명 / 기부금 규모 적음

- 6 -

- 3) **세수 안정성** 훼손 가능성 :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는 조세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세수 예측성(세수전망)이 부정확하고 세수 추계 불안정  
⇒ 재원의 불안정성 ⇒ 정규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 항목으로 인정 곤란
- 4) 재원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과열경쟁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지자체, 중앙정부, 기부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trade-offs) ⇒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움 / 기부금 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가능성  
⇒ 지자체가 충분한 지역경쟁력(내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부금 **유치경쟁(쟁탈전) 과열화 /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 악화 / 모금목표 할당, 준조세화 / 기부 강요, 호객행위 및 구걸(solicit) 행위 우려**
- 5)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경우 : '고향사랑'이라는 순수한 본질 왜곡, 지역 간 또 다른 **세수 불균형(답례품을 둘러싼 새로운 부익부-빈익빈 현상)** 야기 가능성
- ☞ **단점**은 줄이면서 **장점**을 강화하는 전략 필요! ⇒ 복잡 ⇒ 많은 노력 필요

- 7 -

-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목적** (다차원적)
- (1)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확충**에 기여 (재정부족 문제 해결)
- (2)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격차(재정격차)** 개선 ⇒ **국가(지역)균형발전** 기여
- (3)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 (생산 및 고용 증대)
- (4) **지방소멸** 억제 (**인구유입** 촉진)
- (5) **애향심, 포용적 성장 의지** 고취 : 고향 및 농어촌의 중요성 재인식  
⇒ 고향 및 농어촌에 대한 건전한 기부 의사 증가
- (6) **지방경영시대** 특성 발휘 : 지자체 간의 경쟁 촉진  
⇒ 기부금 유치 위한 자발적 노력 경주
- (7)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직접적 연결고리** 형성 : 지자체가 기부자의 의사 존중  
⇒ 지자체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
- ☞ 가장 핵심적 목적 : 지역(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 **국가(지역)균형발전**  
⇒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반쪽의 효과?** (수직적 형평화 > 수평적 형평화)
- ☞ 가장 큰 딜레마 : **자발적 기부** vs. **재정형평화**

- 8 -



### III.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

■ 그동안 고향세 관련 40편에 가까운 학술연구 및 20건이 넘는 입법안 발의

■ 초기 연구 (~2010년)

▲ 박균조(2008) :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도를 문헌 통해 국내에 소개

⇒ 단순 소개 차원

▲ 2010년 논의 본격화 :

△ 당시 한나라당 : 지방선거 앞두고 고향세(향토발전세)를 선거공약으로 검토

△ 원종학(2010) : 연구원 브리핑 (자료) 형식의 요약문 통해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제도적 특징 소개, 고향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제시, 고향세 국내 도입 경우 예상되는 쟁점사항 검토

- 9 -

△ 염명배(2010) : 고향세 관련 연구 국내 최초 학술논문 형태 발표(양성빈, 2016)

① 일본 고향(후루사토)납세 제도 소개 : 긍정적·부정적 측면

② 2009년 도도부현별 고향납세 수입 내역을 재정자립도와 비교·분석

⇒ 고향납세제도가 재정력 격차 해소(형평화 효과)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 지적

③ 시뮬레이션 : 국내에서 모든 출향민이 일괄적으로 자신의 지방소득세의 10%를 자신의 고향 광역자치단체에 기부(고향세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별 고향세 순유출입 규모 분석 ⇒ 순유출(6대광역시 + 경기도) / 순유입(8개 도 + 광주광역시)  
⇒ '한국형 고향세제도' 도입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 [고향 개념 확대, 국세 중심의 소득공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수단 활용] 제시

■ 후속 연구 (2016년 ~)

▲ 2016년

△ 지역연구원 : 박상현·이원학(2016) [강원연구원] / 김동영 외(2016) [전북연구원]

/ 김봉진(2016) [광주전남연구원]

- 10 -

△ 국회 「**고향세법 추진 정책 간담회**」(2016. 6. 29) [황주홍 의원실]

⇒ 기초발제 : 염명배

△ 신두섭·염명배(2016) : 정책방안 제안 - ①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허용(법률 개정), ② 국세 중심의 소득공제, ③ 자기부담금 폐지, ④ 답례품 금지 또는 답례품 가격 상한 설정, ⑤ 기부대상 지역별 소득공제율 차등화 (응원지수 산출)

▲ 2017년

△ 문재인 정부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 및 법제화 움직임 활발

△ 신두섭·하혜수(2017) / 원종학(2017) / 박상현(2017) / 남황우(2017) / 주만수(2017) / 김철(2017) / 이희석(2017) / 심재승(2017)

△ 국회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2017. 11. 20) [박덕흠 의원실]

⇒ 사회 : 염명배 / 발표 : 유선중, 류영아 / 토론 : 이상범, 전지성, 국중호, 김홍환

△ 국중호(2017) / 염명배(2017) /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 기관 연구 자료 : 김진아·이유진(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 육동한 외(2017) [강원연구원] / 이세경(2017) [KOTRA]

- 11 -

▲ 2018년

△ 이병산(2018) / 국중호·염명배(2018) / 염명배(2018) / 류영아·이상범(2018)

▲ 2019년

△ 염명배(2019) / 홍근석·임정빈(2019) / 조재욱(2019) /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

▲ 2020년

△ 조진우(2020) / 유병선·이창림(2020)

▲ 2021년

△ 염명배(2021) / 국중호·염명배(2021)

■ 유형별 분류

▲ 「**제도적**」 측면 연구 : 염명배(2010) / 신두섭·염명배(2016) / 주만수(2017) / 염명배(2017) / 김철(2017) / 이희석(2017) / 심재승(2017) / 이병산(2018) / 염명배(2018) / 조재욱(2019) / 염명배(2019) / 조진우(2020) / 유병선·이창림(2020) / 염명배(2021)

▲ 「**실증적**」 분석 연구 :

△ 국내 자료 : 염명배(2010) / 신두섭·하혜수(2017) /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

△ 일본 자료 : 염명배(2010) / 남황우(2017) / 국중호·염명배(2018) / 국중호·염명배(2021)

- 12 -

## IV.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추진 경과

■ 제18~21대 국회 : **21건**(통합·조정 대안 포함) 발의

▲ 제18대 국회 : **2건** (개정안 2건)

△ 이주영 (2009. 3. 13) △ 홍재형 (2011. 7. 7)

▲ 제20대 국회 : **13건** (개정안 8건 / 제정안\* 5건)

△ 황주홍 (2016. 7. 13)\* △ 안호영 (2016. 8. 16) △ 전재수 (2017. 5. 15)

△ 홍의락 (2017. 6. 1) △ 강효상 (2017. 6. 27) △ 박덕흠 (2017. 8. 8)

△ 김광림 (2017. 8. 9) △ 김두관 (2017. 9. 14) △ 이개호 (2017. 9. 27)\*

△ 주승용 (2017. 9. 29)\* △ 이명수 (2017. 11. 17) △ 정인화 (2018. 8. 27)\*

△ 윤영일 (2018. 9. 13)\*

- 13 -

▲ 제21대 국회 : **5건** (제정안 5건) + **1건** (통합·조정 대안 : 제정안)

△ 이개호 (2020. 6. 3)\* △ 김태호 (2020. 7. 2)\* △ 김승남 (2020. 7. 7)\*

△ 한병도 (2020. 7. 23)\* △ 이원욱 (2020. 8. 18)\*

⇒ 5개 안건에 대한 **통합·조정 대안** 발의 (발의자 : 행정안전위원장) (2020. 9. 22)

[법안 내용]

▲ **기부자격**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 허용

▲ **기부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 **기금설치** : 고향사랑기금 설치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고향사랑기금의 접수 현황 및 운용 결과 공개

▲ **기부제한·처벌·답례품** : 기부·모금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 답례품 관련 규정

⇒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여야합의), 그러나

⇒ 전체회의 통과 못하고 (사유 : 지역기업 부담 / 선거 영향 등 부작용)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계류** (2020. 11 이후 10개월 이상)

⇒ 그동안 4차례 소위 소집 (2021. 2. 25 ; 2차 3. 16 ; 3차 6. 24 ; 4차 9. 24)

- 14 -

■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쟁점) 보완 요구 사항 및 조치사항 (행안부 6. 24)

(1) 보완 요구 : 공무원 동원 모금 강요 방지책 마련

⇒ [행안부 조치사항 (수정안)] : 공무원이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및 모금 강요·권유·독려를 금지하는 의무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 / 기부금 모집 및 접수 관련 종합적 심의·조정기구(고향사랑 기부금 심의위원회) 신설 / 공익 신고자에 대한 제보 조항 신설

(2) 보완 요구 : 기부액 상한선 설치

⇒ [행안부 조치사항 (수정안)] : 개인별 기부 가능 액수를 연간 500만원으로 제시하여 법률로 규정. 다만 초과 액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별 접수 가능 총액수는 연간 100억원으로 제시하여 법률로 정함 / [예외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선포 후에 3개월 이내에 접수한 금액은 상한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보완 요구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중복모집 방지

⇒ [행안부 조치사항 (수정안)] : 기부금의 접수 주체를 어느 하나로, 광역을 제외할 경우에는 역차별 및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모든 지자체의 중복 모금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 / 다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접수 상한액을 동일하게 하도록 조치

(4) 보완 요구 : 시행일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

⇒ [행안부 조치사항 (수정안)] : 2022년도 지방선거 선거일(6. 1) 이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 2023. 1. 1 시행

☞ 우려 사항 대폭 보완 됨 ⇒ 그러나 또 보류 (일부 이견 : “합의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다”) : [행안부가 행안위와 협의 없이 원안 수정?, 기부 한도 설정 문제?, 지자체 모금 허용?, 기부금 자체 반대?] ☞ [일부 이견 : “기부금 신설 불필요” “지방재정조정 제도로 해결 가능” ⇒ 원점으로?] ⇒ 논의 공전(空轉)

■ 법사위 월권 논란

⇒ 소관 상임위(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된 사안

⇒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

⇒ 갑론을박, 계속 재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쟁의)

▲ 여야 원내대표 합의 (2021. 7. 23) : 국회법 제86조 제⑤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 제①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 ⇒ 법사위 상원 기능 축소

■ 본회의 직상정 압력 (2021. 9) : (여·야 합의로 의결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법)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작 ⇒ 그러자 '법사위 통과' 방침에 합의 (9. 16)

■ 4차 소위 통과 (9. 24) : 행안위 대안(원안)에 소폭 수정을 가한 법사위 수정안 가결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9. 24)

■ 국회 본회의 의결 (9. 28) :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



■ 법제화 (2021. 10. 19) : 법률 공포 (법제처) [법률 제18489호]

■ 고향사랑기부제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① 기부주체·대상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② 답례품 :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 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기부액의 30%(100만원 한도)**) 규정
- ③ 기부금 운용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 ④ 모집·홍보 :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지자체 광고로만 모금 홍보가 가능하며,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됨
- ⑤ 개인 및 기관 처벌 :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공무원) :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 : 법 위반시 1년 이내 기간 동안 지자체의 모금·접수 제한 및 위반사실 공표
- ⑥ 세액공제 :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 16.5%

■ 법안(「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평가

☞ 이 법안의 원 취지는 기부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려는 것

▲ 그런데, 법사위 논의 거치면서 **유인책(incentive) 실증 + 규제책(penalty) 강화** :

⇒ 민간의 기부 **유인**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보다는

⇒ 기부 행위의 **부작용**을 막고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제** 일변도의 법안 내용

☞ 본래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 초래

⇒ 이 제도의 정책효과 및 성공 가능성 위축

▲ 과연 국민들이 이런 규제를 뚫고서도 충분한 기부를 하려고 할 것인가 심히 우려

⇒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부 장려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일본은 (거의) 전액 공제 / 우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그 이상은 부분 공제]

\* [일본은 각종 유인책 (금전적, 행정적) : (예)원스톱 특례제도 → 기부 용이하도록]

☞ 일본의 고향세에 비해 우리의 고향세는 **“더한층 깊은 ‘애향심’(부담 감수) 요구”**

## V. 고향세제도의 한·일 비교

구 분	일본 「고향납세제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법적 근거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8. 4) [법개정]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1. 9) [법제정]	
법제화 소요기간	2년 이내	14년	
기 부 조 건	기부자 자격	개인	개인
	기부대상 지역	전국 모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대 상	기부자 거주지 외 전국 모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대상
	자기부담금	2,000엔	없음
기부 한도	없음	개인별 기부 상한 연간 500만원	
답례품 한도	기부금의 30% (권고) [순위] 농·축산물 > 전통 공예품 > 수산물 > 공공시설 이용권 등	기부금의 30% (시행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구 분		일본 「고향납세제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국세(소득공제) + 지방세(세액공제)		국세(세액공제) + 지방세(세액공제)	
적용 예	소득수준	연간 급여소득 700만엔인 주민(무자녀 부부 가구원)이 3만엔 기부 시		연간 급여소득 7,000만원인 주민이 30만원 기부 시	
	부담상황	국세	18.7% (5,600엔)	국세	40.3% (120,900원)
		지방세	74.7% (22,400엔)	지방세	4.0% (12,100원)
	기부자	6.6% (2,000엔)	기부자	55.7% (167,000원)	

**■ 일본사례 벤치마킹 :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 타산지석(他山之石) + 반면교사(反面教師)  
**■ 고향세 한·일 비교 :**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견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은 성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  
 ⇒ 일본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려움  
**■ 한·일 고향세의 가장 큰 차이점 : 재원부담 측면 (재정분담 구조)**

**■ 경제주체(국가-지자체-기부자)별 한·일 고향세 재정분담 구조 비교 (30만원 기부 시)**

구 분		일본	우리나라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소득세 환급)	국가→지방	중 [18.7%]	중 [40.3%]
지자체 (지방소득세 환급)	지방→지방	대 [74.7%]	소 [4.0%]
기부자 (개인 직접부담)	민간→지방	소 [6.6%]	대 [55.7%]

※ 500만원 기부 시 : 기부자 순부담 = 409.15만원(81.8%) - 답례품 100만원 = 309.15만원(61.8%)  
**■ 평가 (재원부담 측면)**  
 ▲ 일본 :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화 효과(horizontal equity : 지방→지방)**에 중점  
 ⇒ (수도권·광역)지자체가 대부분 부담  
 ▲ 한국 : 중앙-지방 간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 국가(중앙)→지방) + 개인 부담(민간→지방) 비중 높음**  
 ⇒ (수도권·광역)지자체는 거의 부담 않고 국가(중앙정부)와 개인(기부자)이 대부분 부담  
 ⇒ 일본과 같은 정도의 **지역 간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지방소득세(시·군세, 광역시세) 환급 : 도(광역)는 부담(환급) 않고 시·군(기초)이 부담 / 광역시 중 자치구(기초)는 부담(환급) 않고 광역시(광역)가 부담**  
 ⇒ 재원부담 놓고 한 지자체 안에서 **광역·기초 간 갈등 우려**

## VI.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 제도의 법적 도입만으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주는 만능책은 아니다
  - ☞ 법제화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 '시작' 단계!
- 고향사랑기부제 :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도
  - ⇒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 (-)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해야 정책실패 방지할 수 있다
- 법제화 이후의 과제 : 이 제도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응하고 정책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하는 작업 ⇒ 단점을 줄이면서 장점을 키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 병행 필요! ☞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노력 필요
  - ⇒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의식을 독려하고 기부유인(incentive)을 극대화하고, 기부흐름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 설계 필요

- 23 -

1. 단기 과제 (제도구현 단계) : “개인기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깜깜이)
  - ☞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 도입 초기(2009년)에는 기부금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오사카시(大阪府) : 47개 도도부현 중 기부금 수입 1위)와 수도권(카나가와현(神奈川県) : 4위), 사이타마현(埼玉県) : 10위))으로 집중되는 '역류현상' 발생
    - ⇒ 시행착오 줄이고 예측력 강화 필요! ⇒ 정책효과 불확실성 해소
- 현 제도 틀 안에서 제도의 충실도 강화 및 안정적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작업
  - 1) 과제 I : 정책효과 추정 -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시범사업
    -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초부터 시행 예정 : 1년 넘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초기의 시행착오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 (1) 쟁점사안 발생 원인으로서의 상충관계(trade-offs) 인식
      - ⇒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쟁점사안들은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내재된 각종 '상충관계'로부터 발생

- 24 -



- ① 기부주체와 정책주체 간 상충관계 : 자발적 기부 (개인의 자유도) vs. 정책목적
- ② 정책목표 간 상충관계 :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증대', '저출산·고령화 방지', '지방소멸 억제' 등 다양한 목표 간 상충관계
- ③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간 상충관계 (예 : 답례품)
- ④ **재원분담** 상충관계 : 국가(중앙정부)-개인(기부자)-지자체(대도시·수도권) 간에 벌어지는 '3자간 제로섬 게임(3-party zero-sum game)' ⇒ 분담비율?

(2) 정책효과 검증 위한 **시범사업(pilot test)** : 제도 본격 시행 이전에 몇몇 지역 선발 해서 시범사업 실시 ⇒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대로 흘러가는가? 추정 ⇒ 문제점 개선  
 ⇒ 일단 일부 **열악한 지역**(예를 들면, 지방세수 하위권 지역, 출향민 상위권 지역, 인구감소 상위권 지역, 인구고령화 상위권 지역, 인기 향토특산물 하위권 지역 등) 몇 지역을 실험대상으로 선정 ⇒ **시범적 실시** ⇒ 시범사업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대부분 예산은 의견조사, 세액공제 재원 ⇒ 실제로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하면 됨)

-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 : '행동경제학' (경제주체 반응)  
 ⇒ 과연 이 제도가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겠는가? ⇒ 미리 check
- (1) **[기부금 공급(유출) 측면]** <기부자> Outbound
  - ①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에 더 많이 (얼마나) 기부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고향과 관련 없는 농어촌(혹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먼저 (얼마나) 기부하고자 하는가?
  - ② 기부금을 한번만 낼 생각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부할 생각이 있는가?
  - ③ 답례품으로는 어떤 것을 원하며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④ 기부액이 답례품 제공이나 세제혜택(세액공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 (2) **[기부금 수요(유입) 측면]** <기부대상지역> Inbound
  - ① 기부금이 반드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 또는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으로 흘러들어 가는가? (즉, 기부금 수입이 재정력 또는 지방소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 ②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어떤 차별적·매력적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 ③ 지역특산물 생산이 지역고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지방소멸 억제 등에 기여하는가?
  - ④ 기부금 수입으로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2) **과제 II** :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 장려 **홍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2019) : 응답자 **96%**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모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61.3%)

⇒ 농어촌·고향세의 중요성, 세제혜택 등 적극 홍보 필요

3) **과제 III** :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경영전략** 강화

▲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 : 지방문제 해결 위한 **하향식(top-down)** [지방재정조정 제도] + 지자체의 독자적 **상향식(bottom-up)** 노력 [기부금 유치] 병행

⇒ 지방경영시대 경영전략 : ① ‘**플레이스-마케팅(Place-Marketing)**’ 전략, ② ‘**지역브랜드(local brand)**’ 전략, ③ ‘**고객관계관리(CRM)**’ 전략, ④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 등

■ **지자체 준비 사항**

(1) **출향민** 통계 파악, 해당 지자체에 관심 있는 외지인 파악 (**demographic data**)

(2) 매력적인 지역 **홍보**, **사업계획**(기금 사용처) 제시 ⇒ 기부금 유치 (**PR**)

(3) 경쟁력, 차별성 있는 **답례품**(향토특산물) 발굴개발 / 답례품 목록(리스트) 작성 (**marketing**)

- 27 -

4) **과제 IV** :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1) 시스템 구축 : ① 행정시스템 : 기부금 납부 및 세금환급 시스템 구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기금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② 유통시스템 : 답례품(지역특산물) 생산 및 배송 관련

(2) 위탁 사업자 선정

☞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업무를 관리·운영하고 답례품 관련 업무(기금관리·운용 및 답례품 배송·결제·세액공제 등)를 담당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행정노력과 비용 수반 ⇒ 대행업체 선정 필요?

▲ 일본의 경우 관련 업무를 민간(사설)업체 위탁하는 사례 : (주)Trust Bank (후루사토 초이스), (주)사토후루 ⇒ 위탁수수료(정액(월3천엔, 연4만엔) or 비례(10~15%)) 징수

▲ 우리나라 업무대행 위탁기관의 선정 방안 :

①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②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기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③ 민간업체(기업)를 선발하는 방안

- 28 -

- ⇒ 전국적 네트워크(유통채널 및 금융결재망)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예 : 농·수·축협, 우체국 등)
- ⇒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기관 사업자 선정도 가능  
(예 : 사업자 그룹 농·수·축협 컨소시엄 / 사업자 II그룹 우체국)

5) **과제 V** :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및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1)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성공사례** 발굴 ⇒ 벤치마킹

■ [예] 일본 성공사례

- ▲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시(市) (2014년 세수 1위) : 답례품 다양화 ⇒ 고향납세 기부금 2013년 3,910만엔 →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년만에 10배 이상 증가  
⇒ **인구유출**이 지속되던 거리가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
- ▲ 나가노현 아난(阿南)정(町) :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전에는 **휴경지**가 많았지만 쌀을 답례품(주민세 1만엔 이상 기부자에게 20kg)으로 보내면서 쌀 수요 증대  
⇒ 상당수 주민이 경작 다시 시작

-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上士幌)정(町) : '슬로타운(Slow-Town)' 이미지 특산물 ⇒ 마을 인구의 5배가 넘는 고향세 기부자 유치  
⇒ **지역총생산**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 답례품 : 지역특산물 이외 다양한 관광상품
- △ 미야자키현 아야(綾)정 : 1박2일 지역여행 항공·숙박권 및 렌터카 제공
- △ 니가타현 나가오카(長岡)시 : '지역 불꽃놀이 축제' 특별관람석 초대
- △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下關)시 : 수족관 관람권 제공
- △ 오이타현 오이타(大分)시 : 야생 원숭이 우두머리 이름 붙일 권리 부여
- △ 나라현 이카루가(斑鳩)정 : 후지노키 고분 '전세(단독)관람권' 제공

(2)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 지역별 답례품의 중복성, 차별성 및 경쟁 우위성, 소비자 호감도·인기도 확인
-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답례품 중복되지 않도록** ⇒ 답례품 차별화
- △ [예] 광역지자체 답례품 :
  - ① 기초지자체 몇 군데를 엮는 관광·음식·숙박·체험 패키지 상품
  - ② 역내 기초지자체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
- 일본의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 **답례품 경쟁력지수** 산정

## 2. 중·장기 과제 (제도개선 단계)

■ 제도의 **문제점 및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해서 성공적 제도로 완성하는 작업

### 1) **과제 I :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 - 기부유인 촉진 전략

⇒ 기부금 내리는 사람은 적은 데 받으려고 할 곳이 많으면 지역 간 **과열경쟁!**

■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해 **기부유인**이 매우 취약

▲ 일본 : 고향세 기부액이 도입 첫해 2008년 81.4억엔 ⇒ 2020년 역대최고인 6,724.9억엔으로 13년동안 82.6배 증가하는 폭발적 신장세

▲ 일본정부의 노력 (유인책 강화) :

- 자기부담금 인하 : 5,000엔 ⇒ 2,000엔
- 세액공제 상향조정 : 지방세(주민세) 특례분 공제 한도액 주민세의 10% ⇒ 20%
- 고향납세 편의성 증대 : 원스톱 특례제도 (자동 처리)
- 지자체의 자발적 답례품 제공 허용

■ 기부유인 제고 방안

- ① 기부상한을 높이는 방안,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③ 답례품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 등

- 31 -

### 2) **과제 II : 기부 흐름 질적 강화** - 정책성과 제고 전략

■ 우리의 고향세제도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 간 재정형평화** 효과 매우 취약

⇒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으로 재원이 많이 흘러 들어가도록 고향세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 간 재정형평화(수평적 형평성) 효과 강화 방안

- ① 기부대상 지자체 조건 강화 [예 :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
- ② 기부금 용도 및 기부금 사업 종류 제한 [예 : 지역경제 발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국한]
- ③ 지역별 세액공제율 가중치(응원지수) 차등화 [예 : 재정력 하위 지자체에 대한 기부에 높은 세제혜택 부여]
- ④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예 : 지방세 공제율 인상]

## 3.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전문 연구기능**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가칭) 설립 및 운영 필요

(예 : 일본 총무성 산하 『고향납세연구회(ふるさと納税研究会)』)

☞ 연구회 :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성공적인 정착 위해 **민·관 협력기구** 바람직 ⇒ 정기적 보고서 발간, 지속적 통계 up-date, 정책조정방향 제시

- 32 -

■ 발표자 연구업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 \* 염명배(2010),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3호, pp.71-111.
- \* 염명배(2016), "고향납세(고향기부제) 도입 가능성 연구", 국회 『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 발표자료집, pp.7-17.
- \* 신두섭·염명배(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제18집 제4호, pp.145-194.
- \* 염명배(2017), "우리나라의 고향세 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3호, pp.27-78.
- \* 육동한·박상현·염명배·전지성(2017),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연구원.
- \* 염명배(2018), "지역 재정 격차와 고향세", 『방송대신문』, 제1953호.
- \* 염명배(2018),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지방재정』, 2018 제6호, pp.30-51.
- \* 국중호·염명배(2018),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2호, pp.73-109.
- \* 염명배(2019),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재정정책논집』, 제21집 제3호, pp.63-109.
- \* 염명배(2019), "농어촌 살리기 대안, 고향세에서 찾는다", 커버스토리, 『신용경제』, Vol. 434, pp.24-27.
- \* 홍근석·염명배(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pp.189-221.
- \* 염명배(2021), "고향세 논의 10년, 다시 고향세를 생각한다 - 고향세 관련 선행연구와 법제화 동향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61-81.
- \* 염명배(2021),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pp.13-28.
- \* 국중호·염명배(2021),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pp.69-99.
- \* 염명배(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근간.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발표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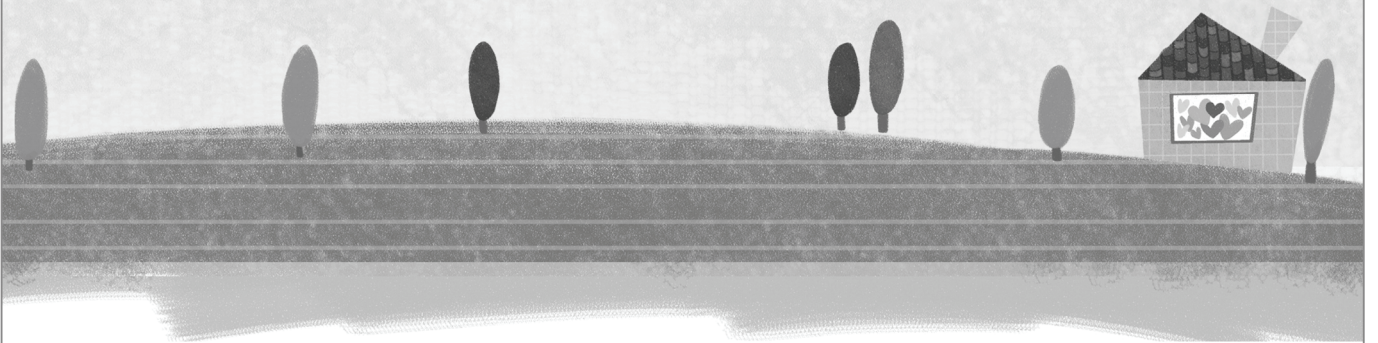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 정착 방향 모색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신 두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21. 11. 23.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Contents

- I 일본 고향세 도입의 배경 및 목적
- II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III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정책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 안착 방향 모색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목적

2/51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1. 일본 후루사토((ふるさと)납세제도: 이하 고향납세제도)도입의 배경

-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납세제도 도입 논의와 경위
  - 2006년 10월 이전, 일부 정치인 중에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에 세금을 내자” 주장
  - 2006년 10월, 일본 후쿠이현(福井県) 니시카와(西川)지사의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 주창
  - 2007년 6월, 아베(安倍) 자민당 정부의 선거 운동에서 주창(민주당, 대도시 거센 반발)
  - 2007년 10월 발간된 “고향납세연구회 보고서(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 고향의 개념,
    - 기부금 납부의 유형 및 방법,
    -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고 보다 활용하기 쉬운 제도 도입 고민 등

3/51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1.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 구체적 논점
  - 세(稅)를 분할하는 방식 가능성
  - 수익과 부담, 과세권, 조세의 강제성, 주민 간의 공정성, 기부금 세제의 응용 가능성 등
- 2008년4월30일,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법률제21호)에 의해 조정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공제(제37조의 2)를 추가, 개인주민세 제도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도입
- 2009년, 실제 소득공제 시행(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북해도)

• 이 보고서 말미에 소득세와 관계 규명, 즉 “국가의 역할” 강조: 기존 이 제도가 개인주민세를 지자체간 “수평적 이전”으로 인식,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논의 되던 것을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 보고서로 평가

4/51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2.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목적

-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후루사토납세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

- 도입 목적
  - 지방창생(地方創生)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와 지자체간 세원 격차 해소 목적
- 삼위일체개혁과 대대적 재정개혁(세원이양, 지역간 세수격차 줄이기 등)
  - 당시 지자체 간 세수격차(전국평균 100),
    - 광역 : 동경도 174, 오키나와현(沖繩県) 61
    - 기초 : 동경도23구 189, 사이타마시(埼玉市) 81

\* 삼위일체개혁(三位一体改革):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라는 이념 하에, 정부로 부터의 관여를 축소,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 지방분권을 한층 추진, 국고보조부담금개혁,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개선) 등의 3가지를 한꺼번에 개혁

5/51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2.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목적

- 고향납세제도 도입 전까지의 논란
  - 이시카와(2007): 도입의 찬반논란
    - 설문조사 결과, 찬성 50% : 반대 26%,
    - \* 수도권(오사카권 포함) 찬성 46% : 반대 33%
  - 반대입장 : ① 지방분권을 도시와 지방의 대립구조?, ② 조세이론 상 수익자 부담원칙의 위배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 그림1 |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고향납세로 일본을 활기치게")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및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에서 인용([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 :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

- 고향(또는 주민이 응원하는 지역에 일정액(2,000엔)이상의 세금(주민세의 일부)을 '기부'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국세)**와 거주지의 **주민세(지방세)**를 동시에 감면해 주는 일종의 **소득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 제도의 개념**

- 기부(고향세 납부)를 하면 그것을 기부 대상 **지역민**과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사용
- 반대급부로 기부 금액에 따른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전달**되는 **상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

- **이 제도의 특징**

- 납세자가 '기부처(지역 및 용도)를 선택 가능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지원(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도움 줄 수 있는 제도
- 지자체가 국민에게 이 제도 추진 호소함으로써 애향심 자극
- 지자체의 존재의의와 고향납세의 사용처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 마련
- 농어촌 지역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추구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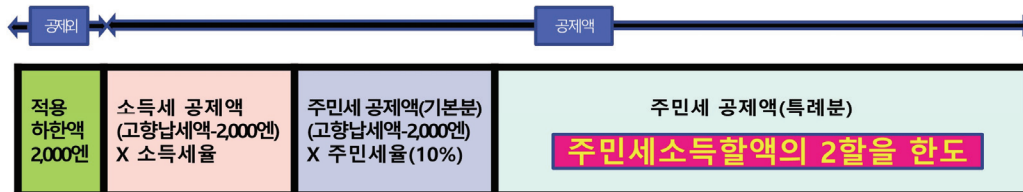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 그림2 | 총무성 고향납세 기부한도와 공제액의 계산

ex) 연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부양가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가, 3만엔의 고향납세를 하면, 2천엔을 넘는 부분(30,000엔-2,000엔)이 소득세와 주민세로부터 공제됨.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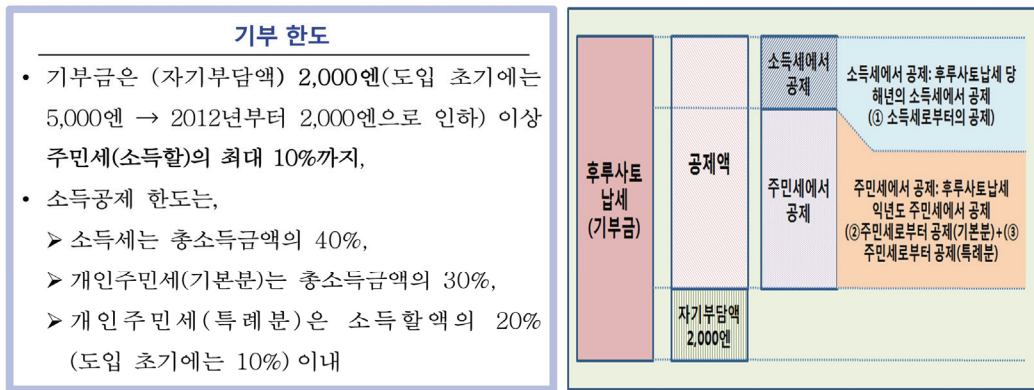
9/51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 그림2 | 총무성 고향납세 기부한도와 공제액의 계산(계속)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참조

10/51

# I.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배경 및 개념

## 3.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념

### ● 고향납세제도의 구조

- (i) 소득세(국세)로부터의 공제 : (고향납세액-2,000엔) × 소득세 세율  
 - 소득세로부터의 공제액은 위 표의 ①의 계산식을 결정.  
 ※ 공제 대상이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40%가 상한.  
 ※ 소득세 세율은 과세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게 설정되도록 하였고, 그 납세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이용하게 됨.
- (ii) 주민세(지방세)로부터의 공제 : 기본분 + 특례분
  - ㉑ 주민세로부터의 공제(기본분) : (고향납세액 - 2,000엔) × 10%
  - ※ 공제대상인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30%가 상한
  - ㉒ 주민세로부터의 공제(특례분): (고향납세액 - 2,000엔) × (100%-10%(기본분) - 소득세의 세율)  
 ※ 주민세로부터의 공제 특례분은 특례분 주민세소득할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상기 표의 ③계산식으로 결정됨.
  - ㉓ 주민세로부터의 공제(특례분) : (주민세소득할액) × 20%
- ※ ③으로 계산한 경우의 특례분이 주민세소득할액의 20%를 넘는 경우는 (주민세소득할액) × 20% 적용. 이 경우 ①, ②, 및 ③의 3가지 공제를 합하여도(고향납세액-2,000엔)의 전액이 공제되지 않고 실질부담액은 2,000엔이 넘음.

1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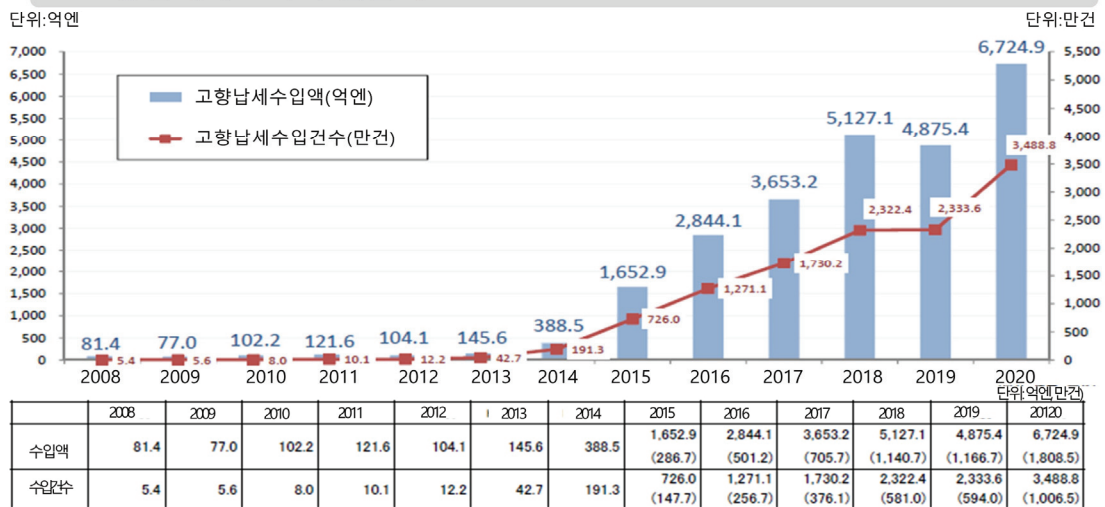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현황

12/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 고향납세제도의 추진실적



주: 1. 고향납세수입액 및 건수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제외한 고향납세로 인정된 것만 계산  
 2. '11년 동북지방 대지진 관련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자료: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13/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처 선택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선택		2021년 결과 단체수(비율)	2020년 결과 단체수(비율)
	선택가능	1,736(97.1%)	1,723(96.4%)
	선택불가능	52(2.9%)	65(3.6%)
- 선택 가능 으로 답한 단 체의 선택 가 능 범위	분야 선택 가능	1,673(93.6%)	1,661(92.9%)
	구체적 사업 선택 가능	449(25.1%)	418(23.4%)
	* 클라우드편팅형	285(15.9%)	214(12.0%)

#### ● 고향납세 사용처 분야의 구체적 내용(단체수)

건강,의료,복지	1,414	스포츠, 문화진흥	1,156
교육, 인재육성	1,393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1,107
아동, 육아	1,351	관광, 교류, 정주촉진	1,053
지역, 산업진흥	1,285	안심, 안전, 방재	812
환경, 위생	1,201	재해지원, 부흥	296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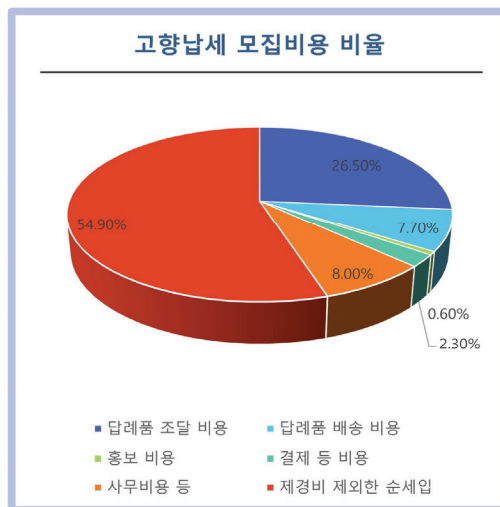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 고향납세 모집에 필요한 비용(전국 지자체 합계액)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율	전년도 결과
답례품 조달 비용	178,335	26.5%	28.2%
답례품 배송 비용	52,024	7.7%	7.7%
홍보 비용	3,872	0.6%	0.7%
결제 등 비용	15,388	2.3%	2.0%
사무비용 등	53,800	8.0%	8.1%
<b>합계</b>	<b>303,419</b>	<b>45.1%</b>	<b>46.7%</b>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 7.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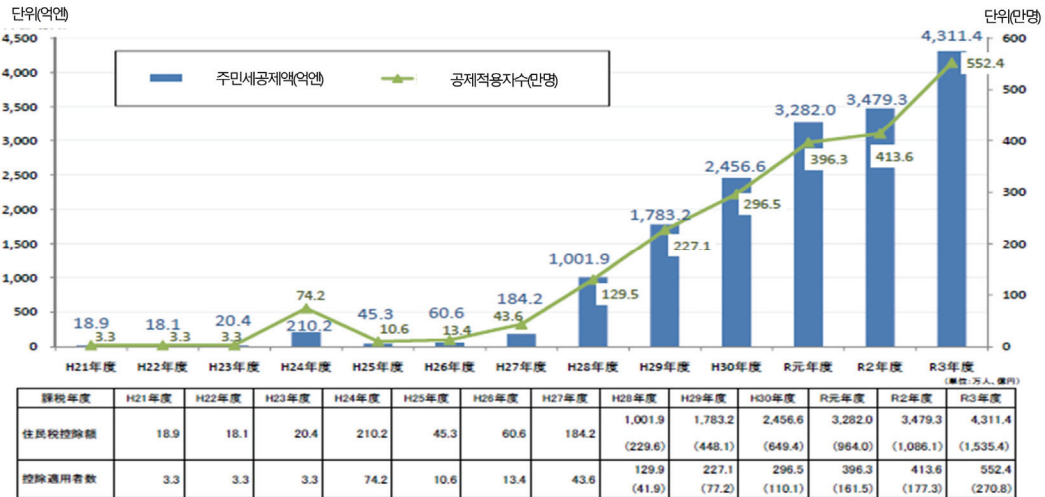
15/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 고향납세제도의 주민세공제액 및 공제적용자수(전국계) 추이



주: 1. 각연도 계수는 전년중(예를 들면, 2021년도는 2020년 1월1일~12월31일)의 고향납세관련 익년도 공제 적용 상황임  
 2. (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3. 2020년까지의 계수는 각년도의 '시정촌세과세현황 등의조사'를 기초로, 2021년 계수는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출  
 자료: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1.7.30. 기준)

16/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 고향납세지정제도

지방세법(1950년법률제226호) 제37조의2제2항및제314조의7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향납세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이 지정됨(2021년9월17일 현재)(적용, 2021년10월1일~2022년9월30일)

구분	전체단체수	지정 신청서 제출 단체수	
		지정 신청서 제출 단체수	지정단체수
도도부현(都道府県)	47	46	46
시구정촌(市区町村)	1,741	1,740	1,740
계	1,788	1,786	1,786

자료: 총무성 보도자료(2021.09.17.),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17/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고향납세미지정단체의 사례(1): 답례품비율 3할초과 및(&) 지역 생산품 이외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작년11월이후 Amazon상품권 등 금전적 상품권류를 새롭게 답례품에 추가하여 모집한 지자체로 당초 취지에 반하는 방법에 의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0억엔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집한 경우인 4단체에 대해 미지정 사례가 있었음

\* 오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 332억엔  
 시즈오카현(静岡県) 오야마초(小山町), 195억엔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코우야초(高野町), 186억엔  
 사가현(佐賀県) 미야키초(みやき町), 99억엔

자료: 총무성 보도자료(2021.09.17.),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18/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고향납세미지정단체의 사례(2): 답례품비율 3할초과 또는(or) 지역 생산품 이외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2억엔을 상회하는 금액을 모집한 43개 단체에 대해 지정대상 기간을 4개월로 함

\*신청서 제출한 전 지자체의 고향납세 수입액 평균이 2억엔 강(미지정4단체를 제외), 기부금 모집을 적절히 수행한 지자체의 수입액 평균이 1억엔 강임을 종합적으로 감안

- 지정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차 7월에 10월 이후 1년간의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제도 하에 있어서 실제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지정 계속의 적부를 새롭게 판단하게 됨

都道府県	市区町村	都道府県	市区町村
北海道	森町(48) 八雲町(26)	大阪府	岸和田市(5) 貝塚市(4) 和泉市(7) 熊取町(30) 岬町(3)
宮城県	多賀城市(6) 大崎市(2)	和歌山県	湯浅町(11) 北山村(5)
秋田県	横手市(4)	岡山県	総社市(6)
山形県	酒田市(6) 庄内町(3)	高知県	奈半利町(5)
福島県	中島村(4)	福岡県	直方市(14) 飯塚市(11) 行橋市(32) 中間市(4) 志免町(4) 赤村(6) 福智町(6) 上毛町(26)
茨城県	稲敷市(5) つくばみらい市(10)	佐賀県	唐津市(2) 武雄市(14) 小城市(11) 吉野ヶ里町(3) 上峰町(13) 有田町(6)
新潟県	三条市(5)	宮崎県	都農町(20)
長野県	小谷村(16)	鹿児島県	鹿児島市(5) 南さつま市(19)
岐阜県	美濃加茂市(2) 可児市(2) 富加町(5) 七宗町(20)		
静岡県	焼津市(16)		

자료: 총무성 보도자료(2021.09.17.),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19/51

## Ⅱ. 최근 동향 및 관련 현황

### 1. 최근 동향

#### ● 고향납세제도의 발전 추이

- 2008년 5월 1일 처음 시행 이후 2012년도까지는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음
- 2013년도부터 기부 건수 및 기부액 규모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
- 기부 건수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도에는 약 5만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도 10만 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도 40만여 건, 2014년도에는 190만여 건,
- 고향납세 한도를 2배로 확대: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액 2,000엔을 뺀 잔액이 공제되는 한도액인 「고향납세 한도(ふるさと納税枠)」가, 2015년1월1일 이후 약 2배로 확충(지방창생과 연계)
-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726만 건(전년 대비 3.8배)을 상회하는 등, 제도 시행 8년 만에 무려 135배나 급증한 가파른 성장세
- 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 도입(2015년4월1일 이후 납부분부터 해당됨)
- 2016년도 지역재생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한 지방관 종합전략 책정, 지자체 대상으로 세제 우대조치

20/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정책

21/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7년 도 ('17.4. ~'18.3.)	4월	-지자체로 총무대신 통지문 발송 -기부액에 대한 답례비율이 높은 답례품에 대해, 답례비율을 조 속히 3할 이하로 조치할 것을 요청 -①금전적 유사성이 높은 것, ②자산성 높은 것, ③가격이 고액 이 것 등을 보내지 않도록 요청
		-전국시장회 및 정촌회 합의 - 총무대신 통지에 입각하여 전국 시장회 및 정촌회의 대응을 위한 합의
	5월	-수입액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개선 요청 - 4월 조사결과 수입액이 많은 200단체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한 개선을 문서로 요청
	7월	-1,100단체에 대한 개선 요청 - 4월 조사결과, 약 1,100단체(상기 200단체 이외)에 대한 도도 부현을 통한 개선 요청 문서 발신
	9월	-총무대신 서간 -"고향납세의 가일층의 활용에 관하여" 발신
	10월	-신프로젝트 착수 및 단체장에 대한 요 청 -"고향기업지원프로젝트",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착수 발표 -전국시장회추계블록총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개선 요청
	1월	-지자체 실무진에 개선 요청 - 전국도도부현재정과장, 시정촌담당과장합동회의에서 개선 요 청
	3월	-사레집 발간 -고향납세활용사레집을 공표

22/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8년 도 ('18.4. ~'19.3.)	4월	-총무대신 통지를 발 송 -개선상황 조사 -총리대신 통지 발송 · 답례비율이 3할을 초월한 답례품을 송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책임과 양식 있는 대 응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 지역자원 활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이외의 송부"에 대해서 양식 있는 대 응을 요청 -지자체에 대해서 신속한 재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4월 1일 시점의 개선 상황을 조사 -"전국 도도부현 재정과장·시정촌 담당과장 합동 회의"에서 개선을 요청 -전국 시장회 및 전국정촌회에서 총무대신 통지를 근거로 한 대응 취지를 재차 확인
	5월	-청문회 실시 -단체장에 개선 요청 -간부진에 개선 요청 -개선 상황이 좋지 않은 도도부현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 -"전국시장회 추계블록총회"(전국 9 블록)에서 단체장에게 개선 요청 -"지방재정연락회의"(전국 8블록)에서 각 도도부현 간부에 대해 검토 요청
	6월	-6월1일 시점 상황조 사 -시장회에서 개선 요 청 -지자체에 대해서 신속한 재검토를 요청함과 동시에, 6월1일 시점의 개선 상황 조사 -전국시장회 창립120주년 기념·제88회 전국시장회의에서 단체장에게 재검토를 요청
	7월	-조사결과와 공표 -통지에 불응하는 12 단체 공표 -조속한 조치를 기자 회견에서 요청 -현황 조사 결과의 공표와 함께, 통지에 따르지 않고 답례품을 보내고 있는 12단체* 를 공표함과 동시에,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총무대신 각의 후 기자 회 견에 요구 *답례 비율 3할 초과 답례품 및 지역 생산품 이외의 답례품을 송부하고 있는 시구정촌으로, 2018년 8월까지 개선 의향이 없고, 2017년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의 시구정촌-이바라키현 사카야마치, 기후현 세키시, 시즈오카현 오야마초, 시가현 오미하치만시,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시,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우에모초, 사가현 가라쓰시, 우레시노시, 기야마초, 미야키초, 오이타현 사에키시

23/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8년도 ('18.4.~ '19.3.)	7월	-단체장에 대한 개선 요청 -행정재연수회에서 사무차관 강연	-전국시장회재정위원회, 도시세제조사위원회합동회의에서 단체장에 개선 요청 -행정재연수회(지방행정재정조사회주최)에서 야수다사무차관이 강연(요지: 총무성 통지에 불응한 사례는 매우 유감 표명, 이 제도 존립위기도 우려, 총무성이 제도적 대응책 검토할 수 밖에 없음)
	8월	-공표된 12단체장에 직접 전화, 진행확인	- 공표 12단체장에 대한 직접 전화, 개선 요청과 함께 개선 진행상황을 확인
	9월	-9월1일시점 개선상황 공표 -납세대상 제외 가능성 기자회견에서 표명	-9월1일 시점 개선상황 공표 및 "과도한 담례품 송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단체에 대한 고향납세대상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을 검토"를 대신(大臣)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표명 - 담례비율 3할초과 또는 지역 생산품 이외 담례품을 송부하는 단체에 대해서 개별 시정춘세 과장 앞으로 통지 발송, 11월1일 현재 담례품 개선 추진 내용 등 조사계획 통지
	10월	- 11월1일 시점 조사 실시 예고	- 11월1일 시점 조사 실시, 조희문서에 '현재 제도 개선 검토 중, 이번 조사 보고결과에 따라 각 단체별 개선 진행상황을 확인
	11월	- 11월1일 시점 기준 초과 단체를 공표 - 여당세제조사회에서 제도 검토	- 11월1일 시점, 담례비율 3할 초과 또는 지역생산품 이외 담례품 송부하는 단체 공표, 그 내용 감안하여 여당세제조사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 표명 - 2019년도 지방세제개정등에 관한 지방재정심의회의 의견: 지금까지 총무대신 통지 내용도 감안하여, (생략), 제도 취지를 벗어난 지자체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개인주민세 특례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

24/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고향납세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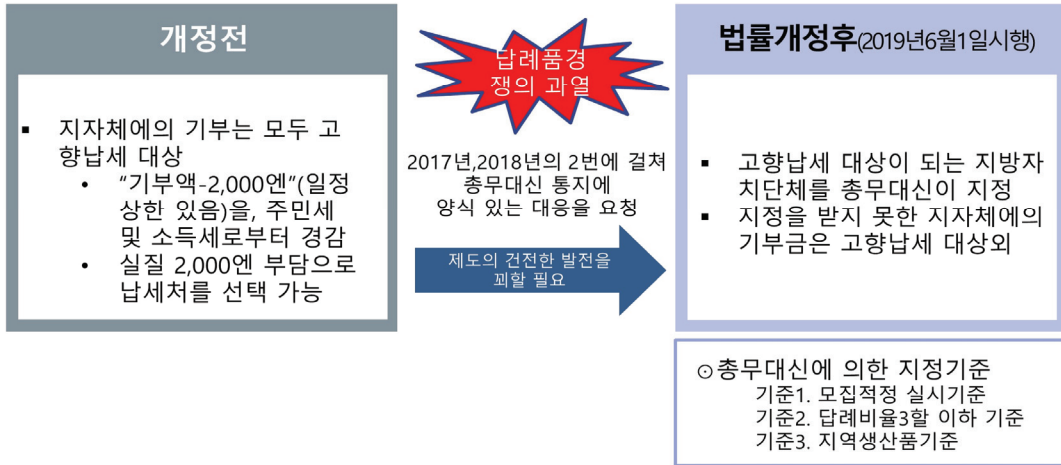
시기	요지	주요 내용	
'18년도 ('18.4.~ '19.3.)	12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당세제조사회에서 논의 -법 성립 후 신제도	-고향납세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 여당 의견 정리 -11~12월 시점과 1월1일 시점 조사를 실시, 조희 문서에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제출 전이기는하나, 본 보고 내용에 대해 담례품 송부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법 성립 후 신제도에 근거하여 지정을 검토할 시 참고하도록 함" 으로 기재 -정부안 각의 결정
	'18. 2월	-개정안 국회제출 -총무대신 코멘트 발표	- 지방세법개정법안 각의 결정, 국회제출 -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泉佐野市)의 대응에 대해 총무대신 코멘트를 발표
	3월	-개정법안 성립 -설명회 개최 -지정제도 창설	-지방세법개정법안 성립 -전국 도도부현 대상으로 한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고향납세지정제도 창설 등에 대한 총무대신 코멘트 발표
'19년도 ('19.4.~ '20.5.)	4월	-재정제도 기준 결정, 고시 -지정제도 관련 신청서 제출 -지자체 의견청취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지정기준 결정 및 고시 -고향납세지정제도에 관한 신청제출(지자체 => 총무성) -신청서 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청취 실시
	5월	-지정 및 단체 고시	-고향납세지정제도 총무대신 지정, 대상단체 고시, 총무대신 코멘트 발표

25/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 고향납세제도의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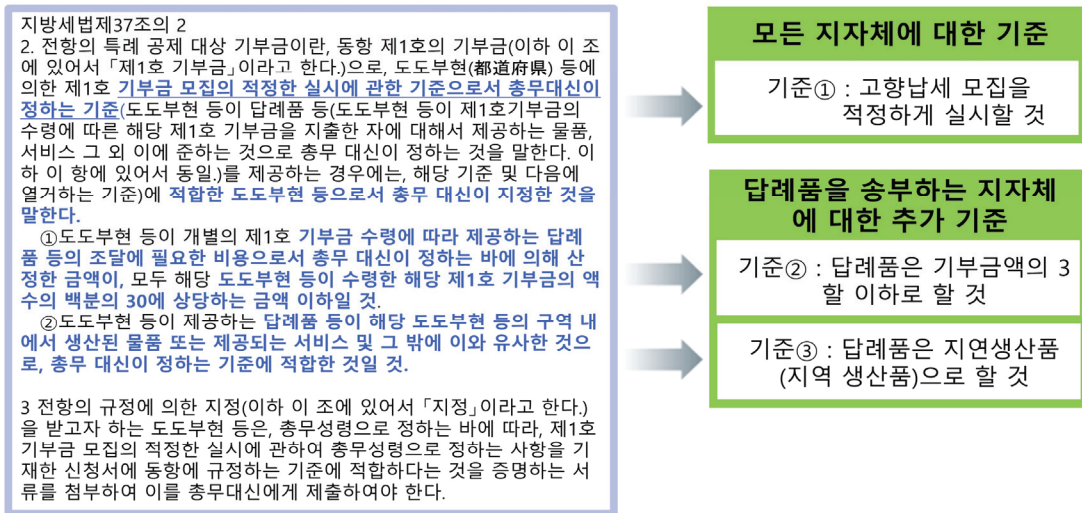
※ 각 지자체는 지정 받은 기간 동안 각 기준에 적합한 모집 수행 필요  
 =>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 고향납세 대상 지자체 지정에 관한 관계조문(개정후의 지방세법)

##### (기부금세액공제)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 기준1. 고향납세 모집의 적정한 실시 기준

##### 1) 제도 취지에 적합한 모집 방법

1. 지자체에 의한 제1호 기부금[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의 모집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추진하지 않을 것.
  - ① 특정인에게 사례금, 기타 경제적 이익의 공여를 약속하여, 해당 특정인에게 기부자를 소개시키는 방법, 그 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모집
  - ② 답례품 등을 강조한 기부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전 광고
  - ③ 기부자의 적절한 기부처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용한 정보 제공
  -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에 대한 답례품 등의 제공

##### 2) 경비 총액 5할 이하

2. 각 연도에 있어서 제1호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이, 해당 각 연도에 수령한 제1호 기부금 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각 연도에 있어서 수령한 제1호 기부금 합계액이 적고, 그 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총무대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타 지방자치단체에의 막대한 영향

3. 2018년 11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사이에, 고향납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방법에 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호 기부금의 모집을 실시하여, 해당 취시의 방법에 의한 제1호 기부금 모집을 실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다액의 제1호 기부금을 수령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것.

28/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 기준3. 지장산품(地場産品)(지연 생산품, 지역 생산품)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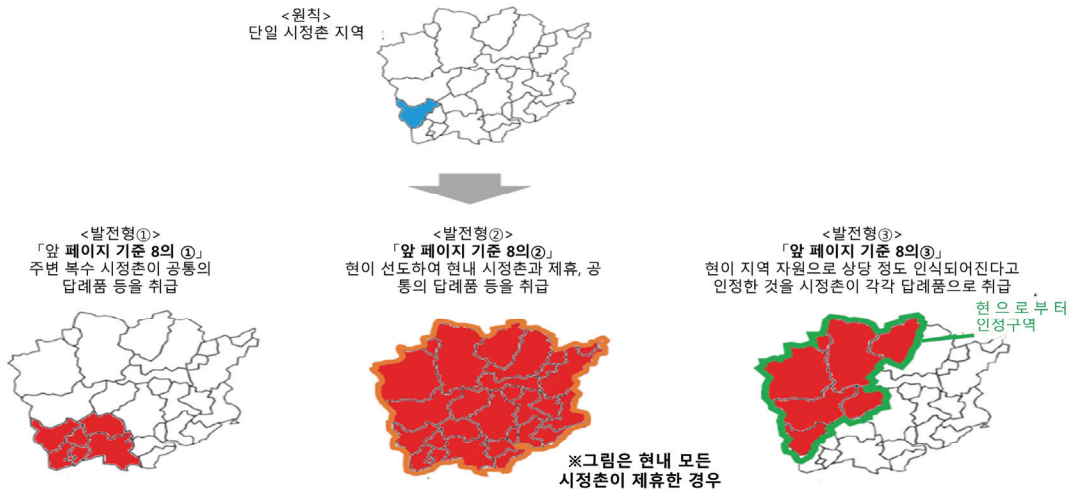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생산된 것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답례품 등의 원재료의 주요 부분이 생산된 것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답례품 등의 제조, 가공 그 외의 공정 중 주요한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 것.
4. 답례품 등을 제공하는 시구정촌의 구역 내에서 생산된 것이며, 인근의 다른 시구정촌의 구역내에서 생산된 것과 혼재한 것(유통 구조상, 혼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일 것.
5.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생산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상품, 오리지널 상품, 그 외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형상, 명칭 그 외 특징으로부터 해당 지자체의 독자적인 답례품인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
6. 전 각호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과 해당 답례품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답례품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것.
7.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의 주요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일 것.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일 것.
  - ① 시구정촌이 인근의 타 시구정촌과 공동으로 이들 시구정촌의 구역 내에서 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통의 답례품 등으로 하는 것
  - ② 도도부현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내 복수의 시구정촌과 제휴하여, 해당 제휴 시구정촌 구역 내에서 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공통의 답례품 등으로 하는 것
  - ③ 도도부현이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 복수의 시구정촌에 지역 자원으로서 상당 정도 인식되는 것 및 해당 시구정촌을 인정하여, 해당 지역 자원을 해당 시구정촌이 각각 답례품 등으로 하는 것
9. 지진재해, 풍수해, 낙뢰, 화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그 피해를 받기 전에 제공하던 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답례품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일 것.

29/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기준3. 주변 시정촌,도도부현과의 제휴에 의한 지역 특산품의 취급



30/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2015년도 세제도 개정에 따라 고향납세 한도가 2배로 확대

- 고향납세는 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감소대책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다양한 의의를 가지는 제도임.
- 이러한 점을 살려, 정부의 가장 중점 과제인 「지방창생」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세제개정으로 고향납세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짐
-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액인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되는 한도액인 「고향납세한도(ふるさと納税枠)」는 2015년 1월1일 이후, 약 2배로 확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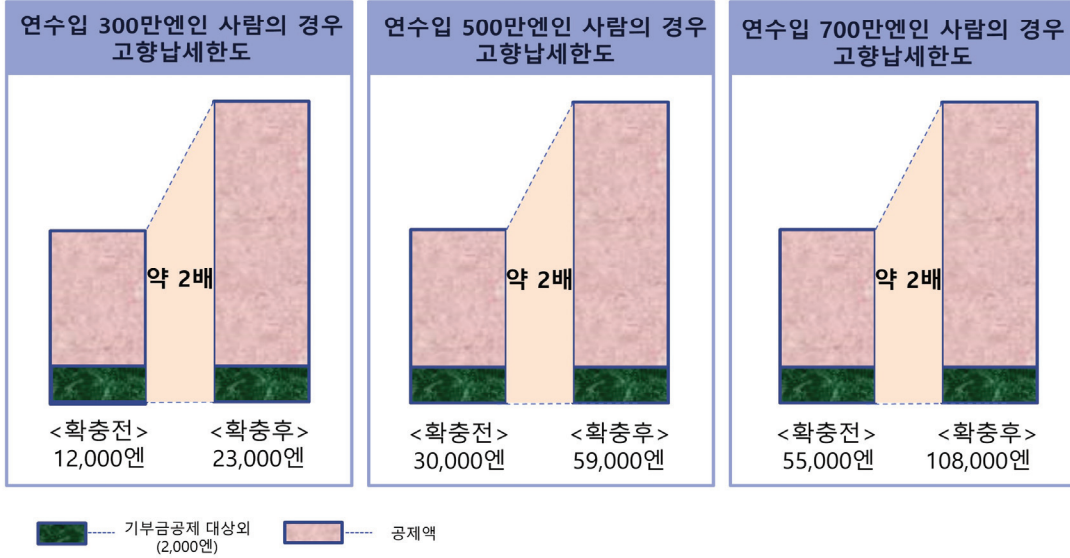
31/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케이스별 구체적인 사례>

\* 부양가족이 배우자만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32/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절차의 간소화(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의 창설), 2015년4월1일 이후 납세부터 적용)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고향납세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향납세의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인 "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가 창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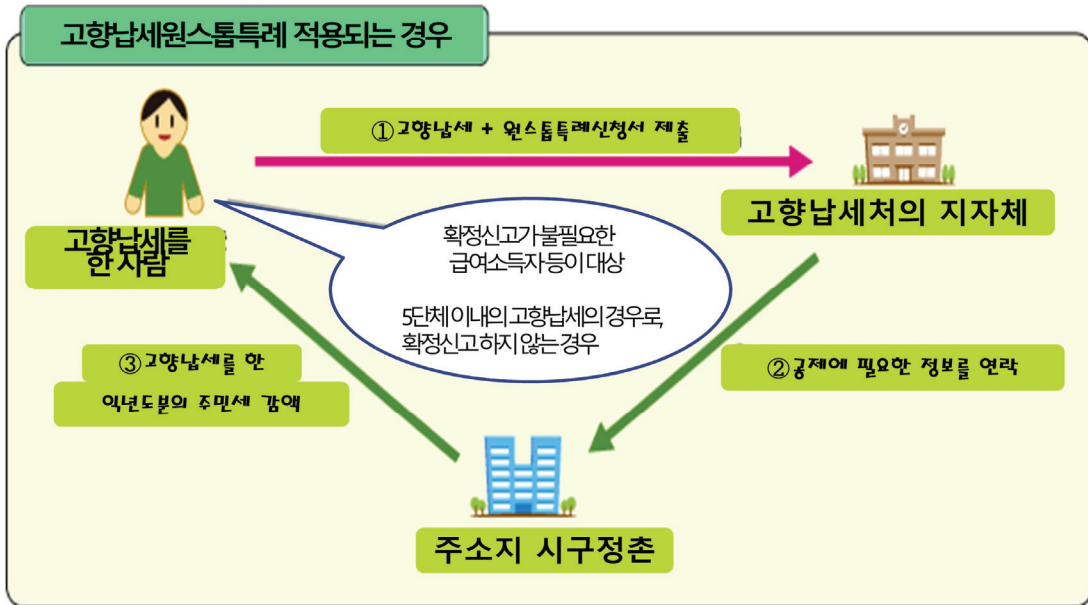
-특례 신청에는 고향납세처의 자치단체수가 5개 이내이며, 고향납세를 할 때 각 납세처에 특례 적용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향납세원스톱 특례 적용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에서의 공제는 발생하지 않고, 고향납세를 한 다음 연도의 6월 이후 납부한 주민세에서 감액되는 형태의 공제가 이루어짐

33/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34/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일본은 2016년 지역재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판 종합전략 책정한 지자체 대상 세제 우대조치

※단, 지방교부세의 불교부단체나, 시정촌 중 전 지역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의 지원대상의 지역인 단체(동경도, 23특별시, 동경도 소재하는 불교부단체(18시정(市町)은 제외

-우대조치 받기 : 지방판종합전략에 속한 사업이어야 함. 일자리 창출과 결혼, 출산, 육아 등 관점에서 효과가 높은 지방창생 사업(중요업적평가지표(KPI)의 설정, PDCA의 정비 등)에 대하여 지역재생 계획을 책정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됨.

- 아울러 인정 받은 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된 지방창생 사업에 기업이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에 대해 우대조치 가능

※ 단, 기업이 본사가 입지한 지역에 기부한 경우, 우대조치 대상에서 제외  
우대조치 내용 : 현행 손금산입 조치에 더해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 세액공제 조치 받음  
· 기부액에 대한 공제액 비율 :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 합계가 기부액의 30%가 됨.  
· 즉, 법인주민세에서 기부액의 20% 공제, 법인주민세로 20%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인세로 공제(단, 기부액의 10%가 한도)하며, 법인사업세에서 기부액의 10%를 공제하게 됨.  
· 납세액에 대한 공제액의 상한은 법인주민세 20%, 법인사업세 20%, 법인세 5%임.  
· 1기업의 1사업 당 기부액 하한액은 10만원

35/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지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기부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자체는 기부한 기업에 대해 기부의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1) 기부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공여하는 것
- 2) 입찰과 인허가로 편의를 도모하는 것
- 3) 유리한 이율로 용자하는 것 등

- 일본의 내각부는 2016년의 사례를 보면, 대상 사업을 8월(제1차)에 102사 업수(총323억엔, 이 중 2016년도 47억엔), 11월(2차)에 총 55사업수(총356억엔, 이 중 2016년도 76억엔)을 결정,

- 그 주요 사업 분야는,

- 1) 일자리 창출(지역산업진흥, 관광진흥, 농림수산진흥, 로컬이노베이션, 인재육성과 확보 등)
- 2) 지방으로 인력 유입(이주 및 정주 촉진, 생애 활력 마을 등)
- 3) 일하는 방식 개혁(저출산 대책, 일하는 방식 개혁 등),
- 4) 마을 만들기(작은 거점, 콤팩트 시티 등)

36/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지방창생지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2016년도에 창설된 기업판 고향납세(지방창생지원세제)는, 정부가 인정한 지자체의 지방창생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이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3할을 해당 기업의 법인관계 세금으로부터 세액공제하는 체계임. 이에 따라 통상 손금산입에 의한 경감효과(기부액의 약 3할)를 합하여, 최대 기부액의 약 6할이 경감되며,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은 약 4할까지 압축됨



#### 세목별 특별조치내용

- ① 법인주민세 : 기부액의 2할을 세액공제(법인주민세 법인세할액의 20%가 상한)
- ② 법인세 : 법인주민세의 공제액이 기부액의 2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부액의 2할에 상당한 금액에서 법인주민세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기부액의 1할, 법인세액의 5%가 상한)
- ③ 법인사업세 : 기부액의 1할을 세액공제(법인사업세액의 20%가 상한)

37/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 총무성으로부터의 특별교부세 조치

1) 기업가에 매칭보조한 경우 총무성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조치세목별 특별조치내용

① 대상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시구정촌(市区町村)

② 대상경비

고향미래투자자가 기업가(사업)를 특정하여 고향납세를 한 경우에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해당 기업가에 보조한 금액(이하,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금액" 이라고 함)에 매칭하여 지자체가 기업가에게 사업 창업의 초기 투자비용(시설정비비, 기계장치비, 비품비)를 보조하는 경우 해당 보조에 필요한 경비. 단, 1사업당 대상경비의 상한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함

※ 시설정비비, 기계장치비, 비품비의 구체적인 사례

- 시설정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공사, 수선 및 구입 경비(용지취득비 제외)
- 기계장치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설계, 공사감리, 수선, 구입 및 리스·렌탈비용
- 비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리스·렌탈 경비

③ 조치내용

상기대상 경비 x 조치율 0.5 x 재정력보정

(1사업당 대상경비 상한은, 고향납세 재원에 보조하는 금액 또는 2,500만엔 중 적은 금액)

자료: 일본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における起業支援及び地域への移住・定住の推進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file/report20171027-02.pdf](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file/report20171027-02.pdf)

38/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고향납세) 제도 도입

##### - 총무성으로부터의 특별교부세 조치

2) 기업가로부터 제안된 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조치

① 대상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시구정촌(市区町村)

② 대상경비

클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지자체로부터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기업가에게 다음과 같은 대상경비로 함

- 기업가가 제안한 사업을 심사 하는 외부 전문가의 보수 등
  - 기업가의 모집
- 단, 지자체로부터 기업가에의 보조는 대상경비에 미포함

③ 조치내용

상기 대상경비 x 조치율 0.5 x 재정력보정

자료: 일본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における起業支援及び地域への移住・定住の推進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file/report20171027-02.pdf](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file/report20171027-02.pdf)

39/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기업관 고향납세제도 활용 사례집>



자료 :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portal/pdf/h31kiogyojirei.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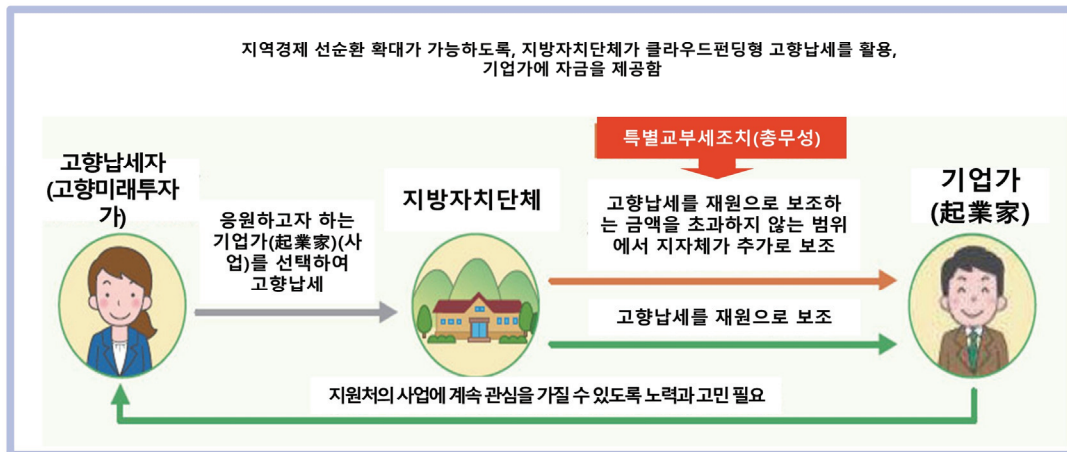
40/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총무성에서는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起業家)지원, 이주교류촉진을 테마로 하는 지원책을 실시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起業家)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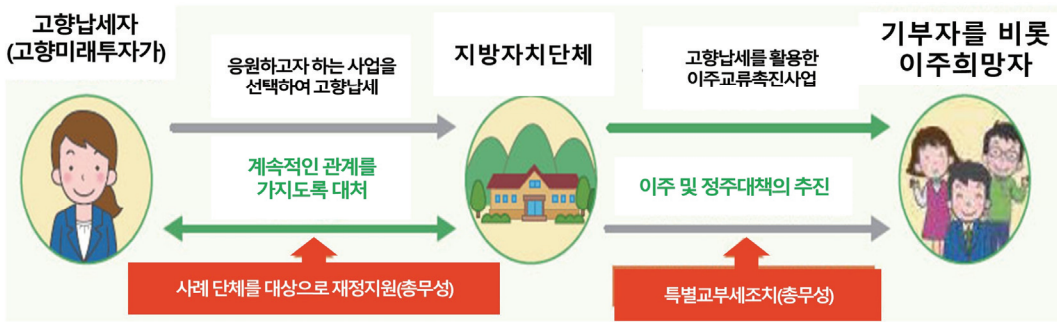


41/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지원책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ain\\_soski/jchi\\_za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support/](https://www.soumugo.jp/main_soski/jchi_za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support/)

42/51

### Ⅲ.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정책

#### 1. 중앙정부

✓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지원책

- 목적 : 과소지역 등을 비롯한 지방권에서는 뚜렷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만들기를 담당할 일손 부족에 직면, 고향납세 구조를 활용하여 이주교류를 추진
- 개요 : 지자체는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향납세를 모집, 이주교류촉진사업을 실시
  - 기부자는 이주 등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기부자를 "고향 미래투자자"로 위치를 부여,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속적인 인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며, 더욱이 기부자를 비롯하여 이주희망자에 대한 이주·정주대책사업을 전개
- 특별교부세 조치 등 :
  - 1) 총무성은 지자체의 이주 및 정주 대책 추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조치 지원
    - 정보발신, 이주체험, 취직지원, 주거지원의 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제외)
      - \* 대상경비는 해당 지역에서의 이주나 정부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한하며, 관광과 산업진흥 등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하는 복합적인 사업과 일반적인 지역활성화 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이주와 정주 대책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경비에 한정
      - 산입율 0.5 X 재정력보정
    - 2) 이주 코디네이터 또는 정주지원원(定住支援員)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교부세 조치
      - 이주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과 이주자에 지원하며, 이주 코디네이터 또는 정주지원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비 등 및 활동경비를 대상으로 함
      - 1인당 350만엔 상한(겸임의 경우 40만엔 상한)

43/51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4/51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고향납세제도의 장단점을 통한 시사점

#### 장점(긍정적인 측면)

1. 세금이 공제된다는 점
2. 특전(답례품)이 제공된다는 점
3. 기부금의 사용처 선택이 가능(신뢰관계 형성)
4. 납세자의 납세액 및 납세지 선택(지방 자치 패러다임전환)
5. 고향의 중요성 및 애향성 고취
6. 지자체의 납세자 존중(자치의식 진화)
7. 지자체간 경쟁(지방경영시대 특성 발휘)
8. 수평적 형평성 제고, 지역간 세수편차 완화, 재정격차 축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9. 지역특산물 관심 증대, 세수증대, 향토 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고용 증대 촉진
10. 지자체 간 인적 교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단점(부정적인 측면)

1.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지방자치원칙 위배)
2.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
3. 기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
4. 세원의 제로섬 게임, 지역간 갈등 초래
5. 재정 취약지역으로 이전 보장 없어 수평적 형평성 효과 미미
6. 세수 예측성 부정확, 세수추계 불안정
7. 현세대 출향민 대상 감정에 호소, 장기적 대안 불가능
8. 득보다 실이 많은 지자체 등장
9. 답례품 관심 높아 고향사랑 왜곡
10. 인기 및 고가 답례품 지자체로 쏠림현상(재정불균형 문제 야기)
11. 지역내 생산 불가능할 경우 타지역 위탁생산, 수입 역외유출

45/51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성공적 정착

-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후 2013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
- 도입 이후 8년 만에 기부 건수는 135배, 기부액 20배 이상 기록
- 성공적 성장과 정착의 배경에는 "답례품 제공" 과 "세제 및 세정의 개편" 을 들고 있음(오오하시, 2015)

#### 1) 가장 핵심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답례품**

- ① 기부자의 70% 가량이 답례품 제공이 가장 큰 기부 동기가 된다고 응답, 지자체의 57%가 "답례품의 충실" 을 가장 큰 고향납세 유치 수단으로 인식
- ②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 집중, 그러나 점차 품목 다양화, 고급화 추세

#### 2) 다음으로 고향납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각종 납세 환경의 정비**

- ① 2012년부터 자기부담액을 종전의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 ② 2015년 1월부터 주민세 공제 특례 한도를 10%에서 20%로 두배 인상
- ③ 2015년 4월부터 납세절차를 간소화(확정신고 불필요)한 '원스톱특례제도'

#### 창설

- ④ 신용카드 납부 및 전자신청

※ 2015년도(2014년 실적) 광역지자체 순 기부수입이 총 157억엔, 기부금이 세입 초과하는 지자체도 10곳 이상 등장하는 등 큰 성과(물론, 경비를 제외하면 적자 지자체도 있었음)

46/51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고향사랑기부금에 주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 중앙정부

- ✓ 법률 제정 후 후속조치로서의 지역 단위의 운영계획 수립 필요
  - 법에 근거하여 지역단위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기본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
- ✓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필요
  -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정제도**를 통해 양식에 어긋나는 기부금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도 마련 필요
- ✓ 우수 사례 발굴 및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제도 운영 측면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지자체에 확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 우수 운영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 ✓ 클라우드펀딩형 사업에 대한 **총무성의 재정지원**
  - 기업가 지원을 위한 총무성의 특별교부세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 고향이주교류촉진사업에 대한 사례단체 재정지원 및 이주정주 특교세지원
- ✓ 기부자의 기부 절차 및 사후 세액공제 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마련
  - 일본의 **원스톱특례제도**와 같이 관련 절차 전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부자 입장에서 편리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7/51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고향사랑기부금에 주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지방정부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필요  
ex) 시마네현(島根県) 오난초(邑南町) 조례제정 사례(\*참고자료 참조)

48/51

##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 답례품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 최소의 답례품 경비 지출
  - 지역 생산품 중 고가의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할 것임
    - ※ 일본의 고향납세 관련 경비 중, 답례품 경비가 가장 큰 비중(총비용의 85% 이상, 조달 및 배송)을 차지, 고향납세제도의 있어서 약과 독을 동시에 제공
- ✓ 유인책 발굴 노력 필요
  - 중앙정부 :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지정제도 도입도 검토 필요
  - 지방정부 : 양식 있는 사업 추진 전제, 지역을 대표하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 발굴 중요
- ✓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기부금 모집 전략 필요
  - 지역 특산품 제공에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 정책(고향 및 기부 대상지 방문, 체험형 방문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속 가능한 사업들로 발전
    - ※ 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입장권, 농어업관련 체험 이용권, 테마파크 시설 이용권 등의 답례품 제공 가능
  - 일본의 고향납세의 사용처로는 주로 건강·의료·복지, 교육·인재육성, 환경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사업처 발굴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49/51

## 참고자료

邑南町条例第 5 号  
平成 2 0 年 3 月 2 5 日

邑南町ふるさと寄附条例

( 目的 )

第 1 条 この条例は、邑南町が将来に向かって力強く成長、発展、自立していくことを願う個人または団体からの寄附金をもって、こころと暮らしのふるさとを守り、町民生活の質の向上と豊かな社会を構築し、活力に満ちたまちづくり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基金の設置 )

第 2 条 前条に規定するまちづくりに要する経費に充てるため、邑南町ふるさと基金(以下「基金」という。)を設置する。

( 基金への積立て )

第 3 条 基金として積み立てる額は、第 1 条の規定により寄附された寄附金の額とする。

( 基金の管理 )

第 4 条 基金に属する現金は、金融機関への預金その他最も確実かつ有利

な方法により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基金の運用益金の処理 )

第 5 条 基金の運用から生ずる収益は、一般会計歳入歳出予算に計上して、

この基金に繰り入れるものとする。

( 基金の繰替運用 )

第 6 条 町長は、財政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確実な繰戻しの方法、期間及び利率を定めて、基金に属する現金を歳計現金に繰替えて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

( 基金の処分 )

第 7 条 基金は、第 1 条に規定する目的を達成するための事業を行おうとする場合、その全部又は一部を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 委任 )

第 8 条 この条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基金の管理及び運用に関し必要な事項は、町長が別に定める。

附 則

この条例は、平成 20 年 4 月 1 日から施行する。

시마네현 오난초(町)조례 제5호(2008년 3월 25일)  
오난초 고향기부 조례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오난초가 미래 활발한 성장, 발전, 자립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마을과 생활의 고향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 활력 가득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설치)

제2조 전조에 규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오난초 후루사토(고향) 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적립)

제3조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된 기부금으로 한다.

(기금 관리)

제4조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금 그 외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금의 운영 수익금 처리)

제5조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며, 이 기금에 예치한다.

(기금의 교체 운용)

제6조 초장(町長)은, 재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확실한 이월 방법,

기간 및 금리를 정하고, 기금에 속한 현금을 세계(歳計)의 현금으로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금 처분)

제7조 기금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위임)

제8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장(町長)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51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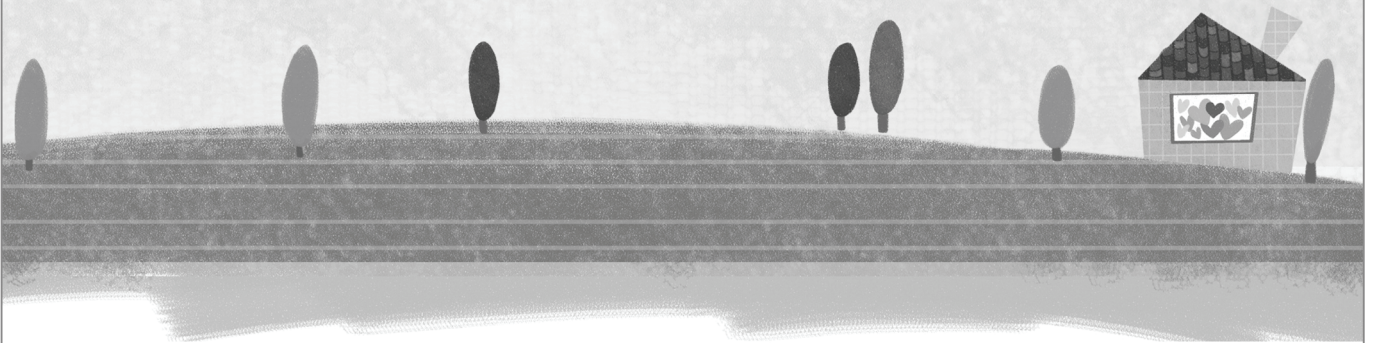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부 록]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

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